

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8. 28

발 의 자 : 오정섭의원의외 5인

1. 제안이유

4.19혁명의 단초가 된 1960년 3월 대전지역의 민주의거를 대전시민이 기념함으로써 숭고한 민주화 운동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발전 시키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1960년 3월 대전지역에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 의거를 3.8민주의거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매년 3월 8일을 3.8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대구광역시 2·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, 「경상남도 3.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추후 예산확보
- 다. 관련부서 협의 : 자치행정과 협의

대전광역시 3.8민주의거 기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3.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3.8민주의거”란 4.19혁명의 단초가 되는 1960년 3월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전지역의 학생의거를 말한다.

제3조(기념일) 3.8민주의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8일을 “3.8민주의거 기념일”로 정한다.

제4조(기념식 및 행사) 대전광역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) ①대전광역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